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6. 1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6. 1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가. 제안이유

-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아울러 조례 중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함(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가 없을 경우는 원심으로 한다고 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액을 500,000원 이내로 함(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인상시키는 건 좋은데 소송을 유발시킨 공무원은 징계합니까? ○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합니까? ○ 패소할 경우 자체적으로 문책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소할 경우 문책을 받습니다. ○ 사안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체 건수의 55% 정도 수행합니다. ○ 패소할 경우 원인행위 공무원은 행정법 절차에 따라 감사실에 통보하며 구상권도 행사합니다.

4. 토론효지

가. 찬성토론

- 승소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도 극히 미약하고 지급 전수도 적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 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함

나. 반대토론

- 타시·군에 비해 포상금이 높게 책정되면 시민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안 좋을 것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원20만원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현행대로 동결시키고 소송담당 공무원은 판결시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폐소율이 낮추어질 것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호
의결년월일	2000. 7. 6 (제79회)

제출년월일 : 2000. 6. 19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아울러 조례 중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함(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가 없을 경우는 원심으로 한다로 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액을 500,000원 이내로 함(안 제5조)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소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가 없는 경우는 원심판결로 결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행정소송(본안) 1건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건당 500,000원 이내

부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생략)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생략)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써 결정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없는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써 결정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생략)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현행과 같음)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1. 행정소송(본안) 1건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건당 5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3. (삭제)
내	②(현행과 같음)
②(생략)	